

■ 공연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6. 8. 25.>

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(제9조의3제1항 관련)

1. 공연장운영자

- 가.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- 나.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

2.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

- 가.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
- 나.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: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